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23 발의연월일: 2023. 5. 18.

발 의 자: 송재호·김한규·민병덕

박용진 • 위성곤 • 이병훈

김경만 · 김철민 · 노웅래

서동용 · 김교흥 · 이형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절차가 까다로운 폐지 대신 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3조등).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을 "중단하려는"으로, "미리"를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 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 전에 해당 사실을 모든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알리는 조치
- 2.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세우는 조치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

른 조치가 이행되었는지와 전원계획에 따라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영유아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집의 제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중단의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7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
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
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
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u>(</u>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정

아

개

<u>및 재개 신고 등)</u> ① -----

7 1 1 1 1

-----<u>중단하려는</u>-----

----<u>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u> 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u>.</u>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

 전에 해당 사실을 모든 보육

 교직원 및 보호자에게 알리는

 조치
- 2.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

<신 설>

<신 설>

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세우는 조치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시장<u>·군수·구청장</u>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 는지와 전원계획에 따라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 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영유 아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청을 철회 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 간 중단하였던 자가 어린이집 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려는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 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 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u>제43조제1항</u>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 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 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 8. (생 략) 제5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 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 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7. 제43조제1항 또는 제4항 |
| |
| |
| |
| |
| 7의2. ~ 8. (현행과 같음) |
|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
| 승) |
| ② 제43조제1항 또는 제4항 |
| |
|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